

'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『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』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월 17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*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

*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(수직보호망, 추락방호망, 낙하물방지망), 사다리형 작업발판

2. 지원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[전문건설업체*(하도급) 포함]

* 「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」 및 「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」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,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
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<지원제한 사유>

- ▶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업에 한함)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
-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- ▶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·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,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

3. 지원설비 및 지원조건

○ 지원설비

구분	시스템비계	안전방망	사다리형 작업발판
지원설비	수직·수평·가새재, 안전난간, 가설계단, 작업발판 등 일체	수직보호망, 추락방호망,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	최대높이 3.5m 이하,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※ S마크 인증품에 한함

○ 지원조건 : 건설현장 당 최대 3,000만원

※ 연간 3회까지 지원(20억 미만: 9개소, 20억 ~50억 미만: 3개소)

구분	시스템비계, 수직보호망	낙하물방지망,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
지원비율	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*하며,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10% 상향 적용 * 덧붙임 1 참조	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비용(공단 판단금액)의 50~65% 지원 ※ 20억원 미만 65%, 20~50억원 미만 50%
비고	①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인 경우,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47%,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호망은 재료비의 50~65% 지원 ②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	

4. 보조금 지급조건
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·구입 완료하고,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
 - (투자완료기간)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 - 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 - (선금급 지급)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금액의 70%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가능
-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,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지원예산) 71,467백만원
 - ※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,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.
- (신청기간) '24. 1. 17.(수) ~ 일선기관별 자원 소진 시까지
- (신청방법)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(덧붙임2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, ☎ 1544-3088) 또는 온라인(clean.kosha.or.kr) 접수

6.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 - ※ (거짓·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 (임의매각·훼손·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(목적외사용·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